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다시함께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와 과제

S

I

E

D

A

N

C

T

E

R

일시_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장소_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156-808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4층 Tel. 02-814-3660 Fax. 02-814-3556
www.dasi.or.kr dasi2003@chol.com

Mc1.56

서울특별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운영주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다시함께센터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와 과제**

일시 2005년 9월 14일 (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실

차례

- 7 한국 반성매매운동에서 민·관 연합 모델로써 '다시함께센터' 소개
- 17 I. 다시함께센터의 법률지원 개괄 ... 조진경 소장
- 29 II. 다시함께센터 상담지원통계 분석 ... 이지숙 사무국장 발표
- 35 III.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 ... 이기영 팀장
- 47 IV. 다시함께센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 ... 이명숙 단장
- V.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 51 1. 업주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 이은희 변호사
... 김명애 상담원
- 59 2.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김인숙 변호사
... 김희재 상담원
- 66 3.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불금 채권무효 ... 정호연 변호사
... 이지숙 사무국장

차례

- VI. 대표적인 법률지원 사례의 향후 지원 방안
- 75 1. 성매매피해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 조인섭 변호사
... 송문옥 상담원
- 81 2. 해외에 송출된 한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김명애 상담원
- 87 3. 성매매 피해여성의 질환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 이성환 변호사
... 윤희숙 상담원
- VII. 지정발언
- 101 다시함께센터와 함께 한 1년 ... 권정순 변호사
- 103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 ... 서순성 변호사



한국 반성매매운동에서 민·관 연합 모델로써 '다시함께센터' 소개	
I. 다시함께센터의 법률지원 개괄	... 조진경 소장
II. 다시함께센터 상담지원통계 분석	... 이지숙 사무국장 발표
III.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	... 이기영 팀장
IV. 다시함께센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	... 이명숙 단장

한국 반성매매운동에서 민-관 연합 모델로써 '다시함께센터' 소개*

1. 다시함께센터 개관
2. 다시함께센터 개요
3. 다시함께센터 구조지원과 의료지원과정
4. 한국의 반성매매운동에서 다시함께센터 활동
5. 앞으로의 다시함께센터

1. 다시함께센터 개관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는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민·관 연합기구로써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센터는 한국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인 2003년 9월 1일 개소하여 2005년 6월 현재까지 9,9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였으며 구조 지원의 전 과정을 system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이 초기 면접상담을 시작으로 법적 지원, 의료·심리적 지원, 쉼터 연계, 사후지원의 전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 있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탈성매매를 위한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센터는 상담기능과 더불어 서울시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곳의 쉼터와 현장지소를 총괄하여 지원시설간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 이 글은 2005년 6월 19일-24일, 한국에서 열린 제 9차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조진경 소장이 발표한 글입니다.

있도록 하는 서울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핵심적 기구입니다. 운영주체인 한소리회가 가지고 있는 20여개 전국의 반성매매 시설들과의 네트워크와 서울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안의 시설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의 장점은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을 위한 대규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캠프, 공동교육 등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 간 정보 공유나 활동가들을 위한 공개 교육, 연구, 홍보, 출판물 등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연대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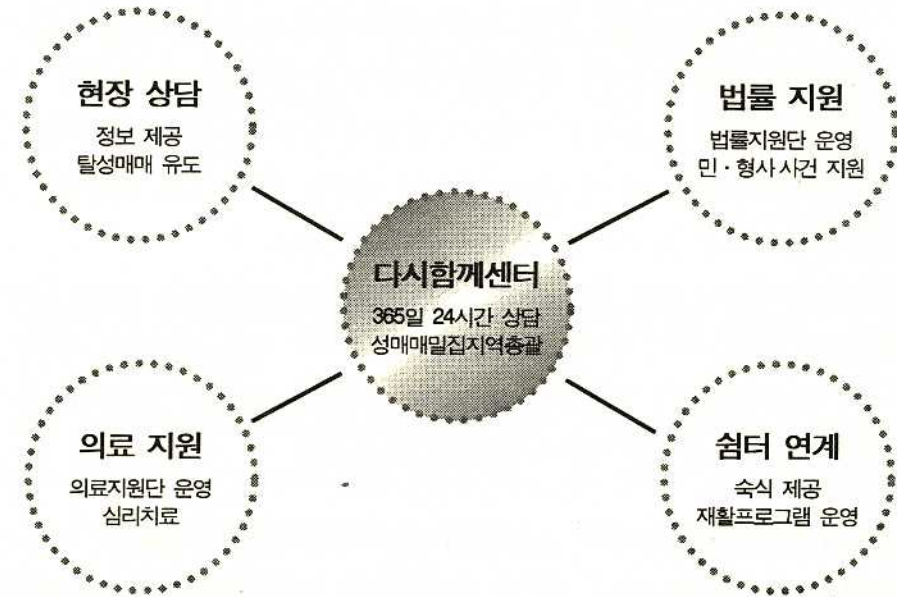
다시함께센터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적,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이슈를 한국 사회 전체에 제기했으며 성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민과 관의 서로 다른 장점(안정성과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관의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고 민의 피해/생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훨씬 현실화 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의 성공적 관계 정립은 또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사법부, 입법부 등 정부의 다른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들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 다시함께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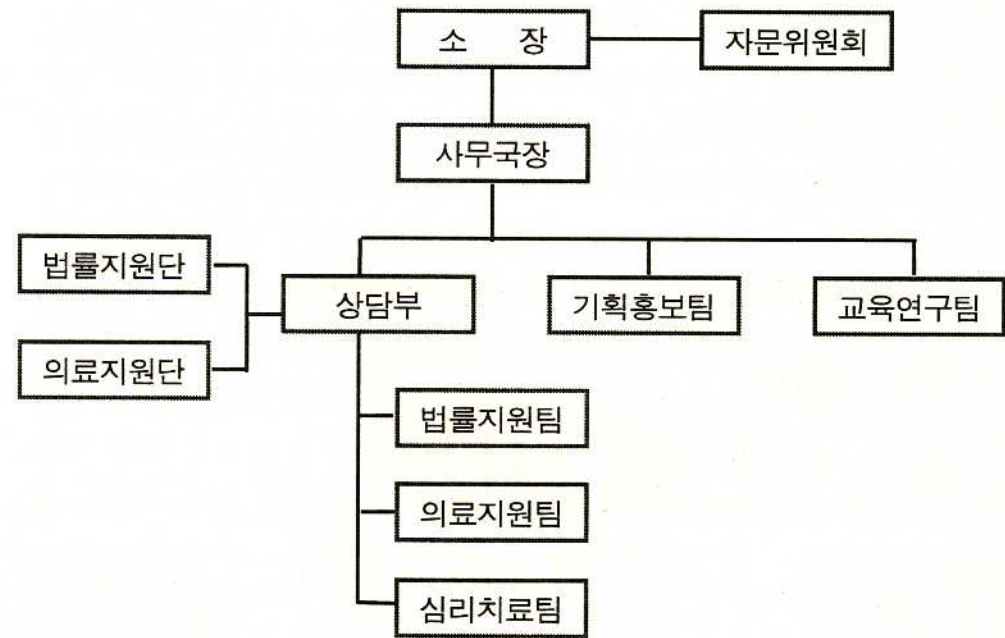
1) 기능

- 상담서비스 제공(전화, 내방, 서신, 온라인, 방문상담 등)
- 긴급구조, 조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긴급보호, 쉼터연계 등 피해자 지원활동
- 성매매 집결지역 방문,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보 제공, 탈성매매 유도
-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강좌와 소모임,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상담센터와 쉼터 지원
-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
- 홍보·출판활동

2) 지원체계도



3) 조직체계도



4) 법률·의료지원단

서울시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회 전반의 법률, 의료, 심리 전문가 그룹을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단은 다시함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선불금, 채무문제 등 법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종합적 자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변호사, 전직 경찰 등 4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단은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에게 기초적인 질병치료와 정신과, 산부인과,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회복,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별 전문의사와 심리상담가 등 44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 센터내 상근 변호사, 상근 심리상담사, 사회복지담당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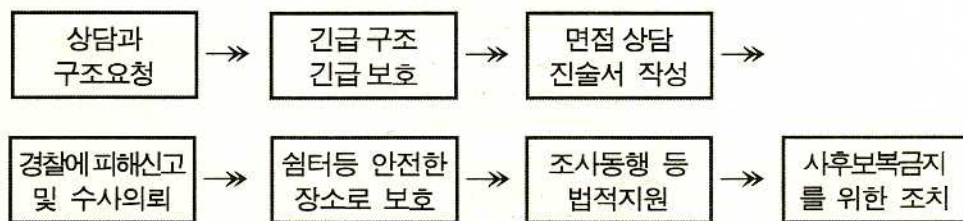
다시함께센터는 2005년도부터 한국의 여성단체 중 개별단체로는 처음으로 센터 자체에서 고용한 상근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사 상근, 사회복지 담당을 개별 파트로 분리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 기타 다양한 소모임이 구성되어 활동

- 탈성매매 여성들로 구성된 소모임(자조모임)
- 센터-쉼터 실무자 협의회
-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소모임

3. 다시함께센터 구조지원과 의료지원과정

1) 구조와 지원과정



2) 의료지원 과정



4. 한국의 반성매매운동에서 다시함께센터 활동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 의해 한국 전지역에 공창이 설치되었고,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군정에 의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체계 하나 없이 법적으로만 공창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창은 사창으로 전환하였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사창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1961년 군사독재정부는 정권탈취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기만적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도덕적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특히 타락한 여성의 선택으로 보며 성매매를 엄격히 여성에게만 제한하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경제부흥이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섹스관광으로 내몰았으며,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미국 주둔군의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를 40여년, 사실상 국가가 성매매를 묵인하고 관리했으며, 심지어 조장하였고, 여성의 몸을 접대하여 사업을 따내는 비즈니스 형태가 기업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은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성매매는 거대한 산업형태를 띄며,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의 연령은 점점 어려워지는, 마침내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 여성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여성들을 성매매 시장으로 수입해오는 등, 한국사회 자체가 거대한 성매매시장화 되었습니다. 2000년 들어 군산에서 일어난 2차례의 화재사건에서 감금 상태로 죽어간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은 성매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은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를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약자)의 몸에 대한 폭력이라 규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을 지원하였습니다.

1) 상담지원현황(2003. 9 - 2005. 6)

구분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서신	기타	총계
계	2,370	2,453	5,036	70	51	9,980

2) 월요무료법률상담실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매주 월요일 센터를 방문, 직접 상담, 소송지원 등

3)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센터가 제기한 집단 소송들

-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주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소송취지 : 성매매 강요, 감금, 인권유린
 - 원고 : 성매매 피해/생존자 7명
 - 피고 : 성매매업소 업주
 - 판결 : 2004. 12 채무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일부 승소

- 파이낸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취지 : 합법적인 대출금으로 위장한 선불금 제공
 - 원고 : 성매매 피해/생존자 5인
 - 피고 : 파이낸스사 사장
 - 진행 중

- 섬에 대한 업주고소와 행정기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취지 : 격리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과 국가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 원고 : 성매매 피해/생존자 3인
- 피고 : 대한민국, 성매매업소 업주
- 진행 중

○ 성매매 피해여성 질환의 책임에 대한 집단소송

- 취지 : 업주의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환발생
- 원고 : 성매매 피해여성 2인
- 피고 : 성매매업소 업주 2인
- 원고인 성매매 피해여성 1인 자궁경부암으로 사망, 센터 의료지원단에서 성매매 피해와 질환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팀 구성과정, 소송 진행 중

4) 센터가 제기한 소송 중 승소 판결 사례

- 선불금 사기 혐의가 인정된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 유흥주점 업주의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 승소

5) 매주 3회 개인 심리상담 실시

센터를 내방하여 상담을 원하는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을 대상으로 센터소속 심리상담사와 개인 상담 실시

6) 성매매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

성매매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의료지원의 필요성을 국내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포럼. 이 포럼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이 공식적으로 포함됨

7)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기 방문, 현장활동

매주 1회 성매매업소 집결지 방문으로 현재 성매매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 현장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법적, 의료적, 생활정보 등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물품제공 등

8)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강좌와 소모임,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매년 2회 유관기관 연합 캠프, 집단상담·치유 프로그램
- 개인 전문 심리상담
- 쉼터 거주자들 삶의 이야기 : 보호시설의 실제모습과 자활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 개최
-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개교육, '내 삶의 임파워먼트' (주 2회, 총 10회 교육) 실시
- 탈성매매 여성 자조모임 운영 - 매달 2회 소모임

9) 교육·연구·홍보·출판 활동

- 활동가, 실무자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 성매매 피해/생존 여성 지원 사례집 '다시함께와 함께걷기' 발간
- 각종 설문조사 통계 분석 보고서
- 보도자료

10) 연대활동

- 연쇄살인사건에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규명과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행동
-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공동 대책위원회 활동

5. 앞으로의 다시함께센터

1)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활동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발, 강제 규정 폐지 요구, 비범죄화 주장 강화
-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주장
- 성구매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알선업자의 불법적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현실적 적용, 몰수추징액 성매매 피해/생존자 지원금으로 환원 요구
- 성매매 피해/생존자를 위한 다양한 판례 생산

2) 성매매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탈업소에서 자활·자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지원 강화
- 해외 송출된 자국 성매매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 한국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강화
- 피해/생존자에 대한 건강검진체계 확립과 치료지원 - 의료기관 연계의 활성화
- 집단 상담, 공개교육 등 피해/생존자 프로그램 실시
- 탈성매매 현장 활동가 육성, 조직화와 활동지원

3) 각종 연구출판물 발간

4) 반성매매에 대한 국제 연대 강화

5) 범국민 의식전환 활동, 국민 참여 운동 개발

I. 다시함께센터의 법률지원 개괄

조진경 소장

1. 인사말
2. 윤락행위등방지법하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경향
3.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 방식의 변화
4.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의 향후 과제

1. 인사말

다시함께센터 2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센터 개소 2주년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이 비슷한 시기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됐습니다. 주제선정에도 신경이 쓰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어차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많은 행사가 있을 테니 이번 2주년 행사는 우리센터의 법적 지원 사례를 통해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의 성과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동안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내셨던 변호사님들과 담당 상담원들의 노고에 감사도하고 어려웠던 얘기나 남은 얘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앞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나누고 힘도 받고 좋은 방법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도 좋은 지혜를 나눠주시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경험되셨으면 합니다.

2. 윤락행위등방지법하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경향

윤락행위등방지법시대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를 당했든 안 당했든 성매매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윤락'으로 처벌을 받아야했으며, 선불금을 안 갚았다면 무조건 '사기'로 처벌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은 수시로 단속에 의해 모두 감옥보다 더한 보호소로 끌려가 강제로 정신개조를 당해야 했고 무조건 전업을 위한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간 지속되었던 법적 지원방법이라면 거의 개인간 합의로 사건화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대부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본인들의 피해가 현저하다 해도 그들이 업주를 고소하면 본인도 처벌받거나, 감수하고 업주를 처벌한다하더라도 윤락녀의 낙인을 악용하는 업주들에 의해, 그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가족이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의지할 다른 대상들의 도움에 의해 업주에게 빚을 다 갚거나 빚의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족이나 결혼에 의해서 빚을 다 갚고 완전히 업주에게서 벗어나거나 다른 일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사채나 아니면 다른 대상들에 의해 또다시 고리의 이자와 빚 갚을 것을 강요당할 경우, 빚을 갚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 여성들은 잠시 쉬다가 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성매매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이미 더 이상의 성매매를 할 수 없는 처지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여성들은 약이나 알콜 등에 의지하며 성매매업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매매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활동해온 민간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여러 계기를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

성매매방지법 제정 전 가장 많이 행해졌던 방법으로, 당시 경찰청의 김강자 총경에게 달려가 형사고소하기 전에 업주를 불러 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업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 성매매(피해)여성을 처벌받지 않게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또한 업주도 처벌받지 않게 하면서,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어 처벌해야 하는 경찰이 범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첫째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사법제도 틀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법률지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법적 문제였으며, 이 1차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 여성들은 어떠한 다른 시도조차 해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996년에 성매매근절을 기치로 하여 전국에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던 단체들의 연합체로 결성된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는 꾸준히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일과 치유 프로그램운영, 법제정운동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활동, 각종 연구활동, 국제연대, 교육, 국민 의식개혁 운동들을 진행해오다 2003년 서울시의 성매매방지대책에 깊숙이 관여하며 8월에 '다시함께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시함께센터에서 그 외 사업들을 한소리회에서 수행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 방식의 변화

2003. 9. 1. 개소이후 다시함께센터는 도움을 요청한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매매 영업형태별 지원형식을 도식화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결지나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보도방,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유업종 등 성매매 영업형태는 천차만별로 다양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

성을 지원하는 일은 다른 여성폭력 관련일과 달라 지원방식을 성매매 영업형태 별,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소된 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매매(피해)여성이 센터를 방문하면서 시작되는 법적지원과정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진술서' 작성을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보편적 사회와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성들은 일반적 사회에서는 당연한 피해로 인식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에서는 너무나 자주,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원들은 이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묻혀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하고 이것들을 성매매(피해)여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이일은 경찰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매매여성자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 알아내기 위해서 이 여성을 압박 지르고 자백을 강요하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거의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이 여성이 구체적인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술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잘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진술서 기록 형식을 매뉴얼화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고소방법보다는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피소된 경우나 피소될 때까지 기다렸다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 대응방법이 주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3538건의 상담을 지원하면서 140여건의 법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업소별 피해상황에 대한 유형별 파악이나 지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방식도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법률지원방식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고(예를 들어, 상담원이 얼마나 잘 싸웠나,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좋은 경찰을 만났는가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원방법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4년 센터에서는 법적지원방식을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식의 개발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법률지원방식을 상담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내담자가 내방하여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성매매 업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센터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법률지원단이 센터에 내방하여 월요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지원방식을 적용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이 법률전문가들에게 질높은 법적 지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세적 법률지원방식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데 집중했던 방식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업주를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형화된 판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초 J집결지에서 8명이 한꺼번에 업소로부터 나와 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판례를 만들기에 적합한 사례였습니다. 센터는 이를 위해 이들의 진술서를 다시 정교하게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이들의 빛이라는 것이 사실상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인신매매 대금의 성격을 띤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었음과 이들은 이 빛을 갚기 위해 개인별로 길게는 3년 이상을 한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야 했지만 결국 빛을 갚지 못하고 업주 고소에 이르렀던 상황을 법정에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2004년 초 'H섬'에서 구조를 요청했던 성매매(피해)여성들을 구조지원하는 과정에서 섬이라는 곳이 사실상 천연의 감옥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점과 섬주민 전체와 그곳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체계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센터는 섬의 경우는 업주 처벌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섬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하고, 섬주민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성매매가 존재할 수 없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정형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례로, 성매매업에 제공되는 선불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담 의뢰되었지만,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할 수 없었던 사례로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선불금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정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D파이낸스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선불을 제공받고 사기 피소되었던 5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을 묶어 D파이낸스를 형사고소하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들 3가지 사건을 기획하여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성매매 피해상황을 알리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중 마침 2003년 말경 강지원 변호사가 주도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던 방식을 적용하여 센터에서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소송에 대해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2004. 5. 13. 서울시의 지원으로 서울시청 별관 기자회견실에서 1) J집결지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 H섬의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 D파이낸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됨을 우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우리 사회에 성매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성매매 피해 현실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업주와 경찰의 유착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발하면서(국가인권위 진정, 부패방지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활용 등) 경찰의 성매매에 관련한 책임을 촉구하고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오던 법률지원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7월 드디어 선불금을 갚지 못했다는 점으로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기 피소된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은 아무런 어려움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공세적 법률지원으로 이제까지 거의 처벌받지 않던 업주들은 집결지뿐만 아니라 룸살롱, 다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모텔 등에서 줄줄이 처벌받게 되었고 그 소문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여성단체에만 도움을 요청했다하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보자고 하는 업주들이 쇄도하게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여성부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의료지원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의뢰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부인과질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2004. 12. 성매매가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폭력행위임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업주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것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습니다.

이제 센터가 집단소송형식으로 성매매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12월 J집결지 업주는 성매매(피해)여성 각 1인당 10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줘야하고 선불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6월에는 D파이낸스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제공된 선불금임이 인정되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H섬에 대한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결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만일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항소하여 섬이 천연의 감금지라는 것과 주민과 관련 공무원의 목인이 없었다면 성매매 영업도 없었을 것임을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인과질환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 묻고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본 센터의 의료지원 데이터를 의료지원단과 함께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 센터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지금도 여성들의 몸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업주들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 성매매산업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4151건의 상담 중 1900여건의 법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법률

지원단의 꾸준한 활동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센터 상담원들의 역량강화로 법률 지원의 체계화와 시스템 구축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상담원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정형화된 판결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동일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을 만들어 낸 것은 다시함께센터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서 이뤄 낸 법률지원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4년도의 성과를 안착시키고 보다 정교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센터 내 상근변호사를 고용하였으며 법률지원단 중 법률가들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좀더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상담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교육과 강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꾸준한 지원의 성과로 전향적이고 새로운 판결이 계속 나왔으며, 그 내용은 1)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불금채권 무효 2) 선불금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강간 등 인정 4)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업무사기 인정 등입니다. 2005년 들어 현재까지 총 3725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그 중 법률지원은 14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상근변호사를 통해 상담원들이 수시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상담원들의 법률지식향상에도 효과적이었지만 그밖에도 구속된 성매매(피해)여성의 접견이나 조사동석, 각종 변론,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 의견서 제출 시 자문 등에 실질적인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법률지원 시스템의 정착과 안정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법률지원 방식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도 전향적이고 효과적인 판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의 향후 과제

다시 한 번 센터의 법률지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의 목표는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이 온전히 탈업소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

해 형사적, 민사적 법률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적, 심리적, 정신적 지원과 안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원 시스템은 다시함께센터의 구조적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지원 시스템은 센터의 구조적 시스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 해결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또 다른 출발의 1차적 관문이 되었기에 센터는 그동안 법적 체계 형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센터는 중요하지만 잠시 미뤄왔던 다른 지원 시스템의 확보를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 체계 확보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체계 확보, 비입소 내담자를 위한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실시, 연구 출판 확대, 국제연대 강화 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원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개발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과정에서 소외돼왔던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원방식 개발은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법률 지원 중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으로 송출되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방식 개발과 국가간 지원 단체 네트워크 건설

현재 센터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지원요청이 가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현지의 관련자를 통해 조금씩 지원하였지만 그 외 마카오나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 송출된 여성들에 대해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모아 일본에 직접 입국하여 일본 경찰과 단속을 함께 하고 일본의 인권변호사를 통해 일본법을 통해 한국에서 송출된 성매매(피해)여성을 도울 수 있는 법률지원 방식을 정형화하고 관련 지원 단체를 거점화하는 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본 뿐 아니라 그 외 국가들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인터폴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그 나라에 입국하여 문제를 풀어내고 지원방식을 정형화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원정 성구매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처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합니다.

2005. 7. 대검찰청에 베트남에서 성매매로 체포된 후 훈방된 한국인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몇 군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 등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 국내법 적용을 해 처벌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상담위탁 등 교육이 함께하는 처분이었어야 한다는 점과 나아가 성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 원정 성구매와 알선업자에 대해 감시하고 처벌하게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 신종 퇴폐·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을 비껴나가기 위한 각종 신종 퇴폐·변종 성매매 업소가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대딸방' 등이 그 중 한 예이며, 현재 대딸행위가 유사성교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정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05. 7. 대딸방을 경영한 업주에 대한 무죄판결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고, 센터의 진정서와 센터 변호사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법정에서 나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판결에 주목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산업형 성매매 축소방안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변호사 소모임을 주축으로 하여 이를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각종 법률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확인, 세무비리 확보 등 증인, 증거물 확보, 새로운 방식을 개발, 적용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법률안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 윤방법 적용과 성매매방지법 적용의 업주 처벌 형량 비교, 재산몰수, 추징, 성구매자 처벌 등 성매매 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알선업자에 의해 강요된 탕치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7) 강남 등 고급형 룸살롱 업소에 대한 성매매방지법 적용 판례 마련 등입니다.

II. 다시함께센터 상담지원 통계 분석

이지숙 사무국장 발표

1. 기관명 : 다시함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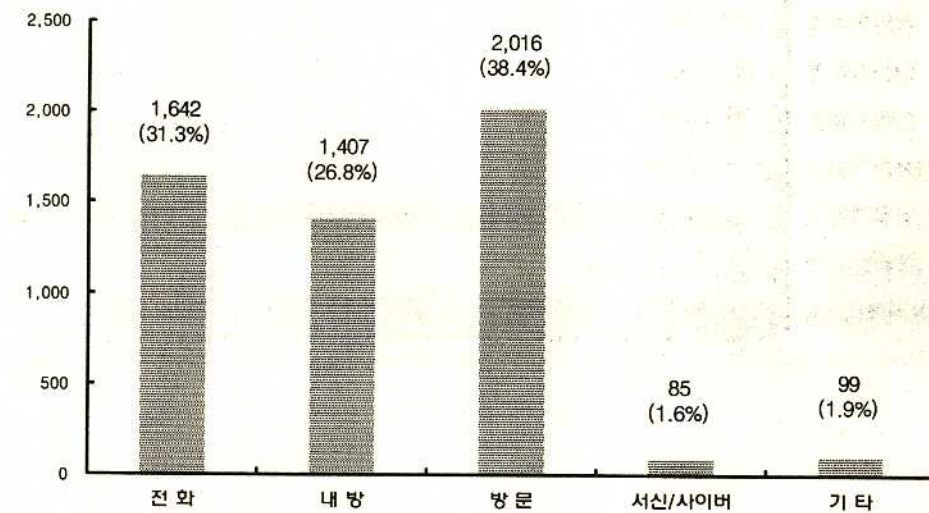
2. 상담기간 : 2004. 9. 1 ~ 2005. 8. 31

3. 상담구분

1) 상담유형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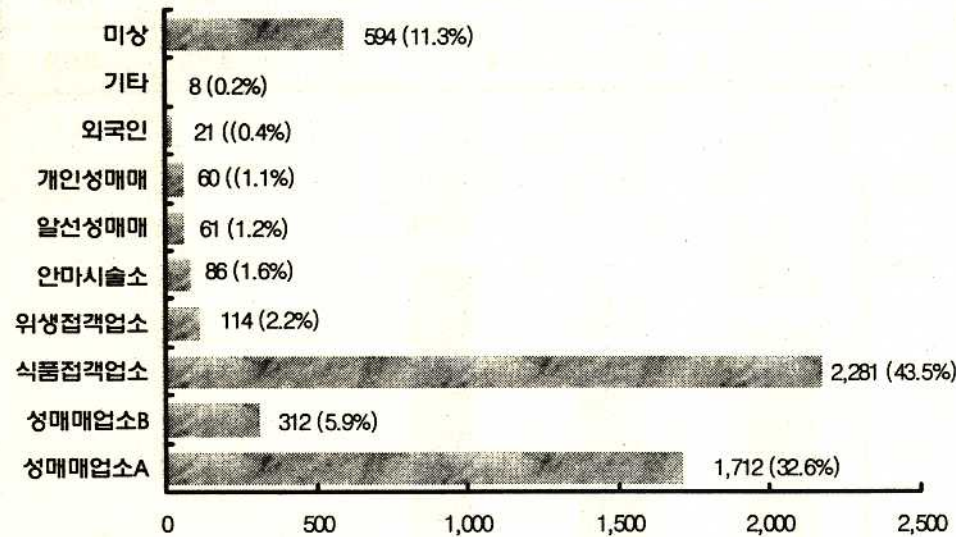
구분	전화	내방	방문	서신/사이버	기타	총계
계	1,642	1,407	2,016	85	99	5,249
백분율	31.3%	26.8%	38.4%	1.6%	1.9%	100%



2) 업소유형

(단위 : 건)

구분	계	백분율
성매매업소A	1,712 (550/1162)	32.6%
성매매업소B	312	5.9%
식품접객업소	2,281	43.5%
위생접객업소	114	2.2%
안마시술소	86	1.6%
알선성매매	61	1.2%
개인성매매	60	1.1%
외국인 전용클럽	21	0.4%
기타	8	0.2%
미상	594	11.3%
총계	5,24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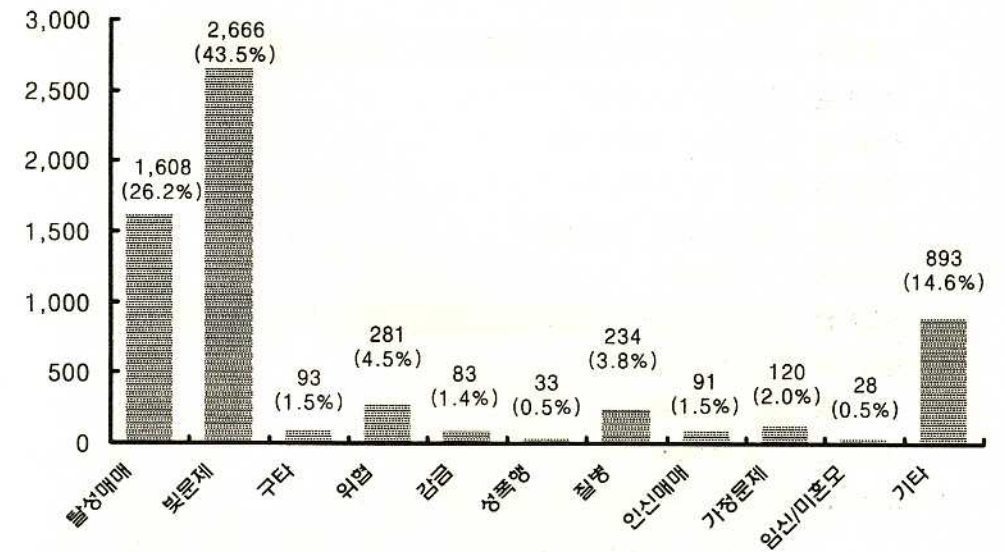


3) 상담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백분율
탈성매매	1,608	26.2%
빚문제	2,666	43.5%
구타	93	1.5%
위협	281	4.6%
감금	83	1.4%
성폭행	33	0.5%
질병	234	3.8%
인신매매	91	1.5%
가정/주거문제	120	2.0%
임신/미혼모	28	0.5%
기타	893	14.6%
총계	6,1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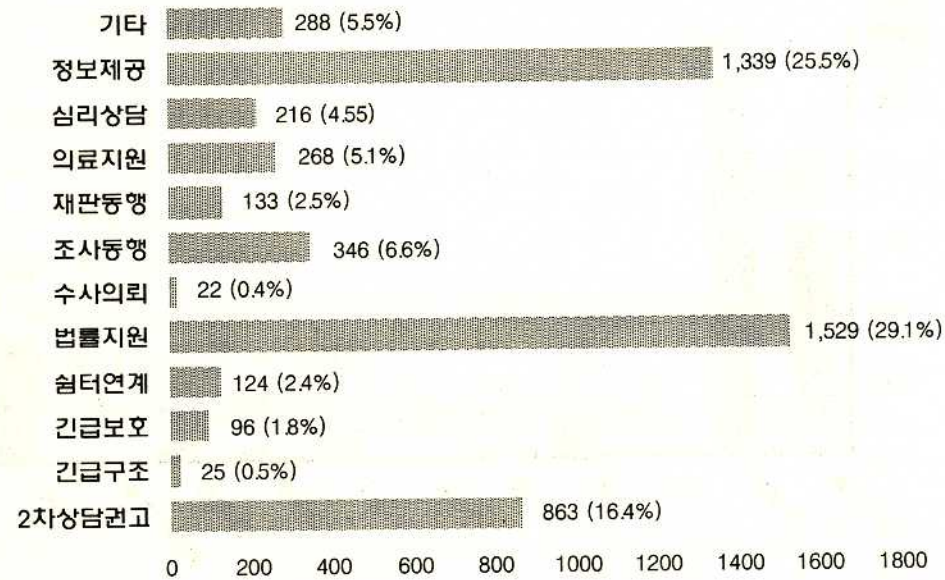
*중복집계



4) 상담조치결과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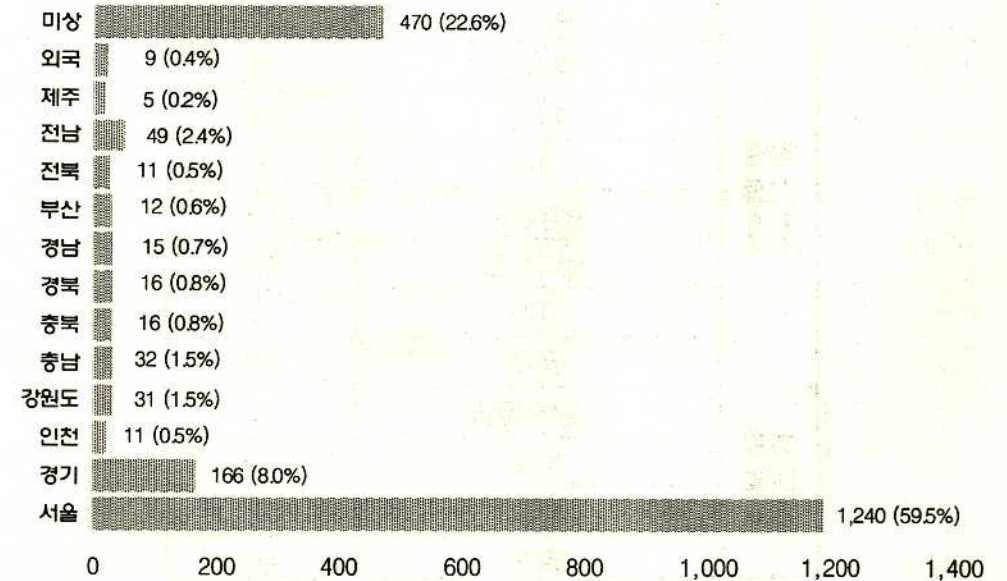
구분	계	백분율
2차상담권고	863	16.4%
긴급구조	25	0.5%
긴급보호	96	1.8%
쉼터연계	124	2.4%
법률지원	1,529	29.1%
수사의뢰	22	0.4%
조사동행	346	6.6%
재판동행	133	2.5%
의료지원	268	5.1%
심리상담	216	4.1%
정보제공	1,339	25.5%
기타	288	5.5%
총계	5,249	100%



5) 성매매 지역

(단위 : 명)

구분	계	백분율
서울	1,240	59.5%
경기	166	8.0%
인천	11	0.5%
강원도	31	1.5%
충남	32	1.5%
충북	16	0.8%
경북	16	0.8%
경남	15	0.7%
부산	12	0.6%
전북	11	0.5%
전남	49	2.4%
제주	5	0.2%
외국	9	0.4%
미상	470	22.6%
총계	2,083	100%



6) 법률지원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계
합의		29
기소		133
불기소	무혐의	61
	기소유예	9
	기소중지	5
	죄안됨	4
	공소권없음	5
	참고인증지	1
소송결과	승소	71
	패소	-
사건종료	민사	74
	형사	275

7) 의료지원활동실적

(단위 : 건/명)

구분		계
과별진료(건)	산부인과	73
	신경정신과	23
	외과	15
	내과	6
	건강상담	136
	심리치료	216
	기타	15
	총계	484
지원내용(명)	진단서발급	12
	치료	116
	수술	12
	총계	140

III.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

- 서울시의 "다시함께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이기영 팀장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

I. 들어가는 말
II. 서울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경위
III. 민·관협력에 의한 주요 추진 성과
IV. 향후 계획

I. 들어가는 말

서울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성매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성매매방지정책 분야가 마치 불모지와 같았다.

자생적인 소수의 민간단체만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뿐,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성매매방지대책을 추진한 사례가 없어서 마땅히 조언을 해 줄 전문가도 드물었고 사업을 같이할 파트너로서의 민간단체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관협력체계에 의한 정책의 추진은 민간의 노하우가 정책에 접목되어 정책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2004. 9.23)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성매매 방지대책은 세간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매매근절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대책 분야가 미개척 분야라는 점, 대책추진에 대한 저항이 심하여 시민적인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성매매방지정책의 최초 계획 입안단계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추진과정에도 시설의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한소리회' 등 민간단체와 '은성원', '사랑의세계' 등 사회복지법인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하여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I. 서울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경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2002. 7. 1)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도시재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 한곳인 성북구 하월곡동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어 2002년 11월 4일 간부회의시 "길음 뉴타운 인근에 위치한 속칭 미아리 텍사스 지역의 재개발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유도를 위한 자활정책을 수립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 지답사와 6차례의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활동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매매집결지역 종사자 선도 및 재활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2003. 4. 10)하였는데 이것이 서울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시작이다.

이와 같이 최초의 서울시 성매매방지대책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집결지역의 성매매 종사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유도 및 자활지원대책 중심이었다. 성매매집결지가 개발되면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일시에 사회로 내몰리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사회적 적응력이 없는 이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다시함께프로젝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매매 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및 각종 홍보사업 등을 포함하여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전하였다.

다시함께 프로젝트(Seoul Together Project : STOP)의미

서울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매매종사여성 자활지원대책의 명칭을 시민들에게 공모·결정하였는데 '다시'는 성매매종사여성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자활의지의 표현이며 '함께'는 성매매종사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모두 함께 도와주고 지원해 주자는 것을 의미

III. 민·관협력에 의한 주요 추진 성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책의 유형에는 ①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업주 및 알선자, 광고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② 성매매종사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유도 및 자활지원을 통하여 성매매에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있으며 ③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의식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성매매종사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다.

서울시에서는 성매매종사여성들의 탈성매매 유도과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성매매방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과 시민의식 개혁 운동을 지원하는 것에 아울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매매종사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과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서울시 성매매방지대책의 모든 분야를 민·관 협력체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1. 보호시설, 현장 상담센터 등 자활 지원시설 확충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 중의 하나가 시설의 확충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은 물론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다시함께센터”를 설치(2003. 9. 1.)하여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다시함께센터”는 현재 서울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인 “다시함께프로젝트”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다시함께센터 설치 이후에 시행된 현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시설은 지원시설(쉼터)과 상담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시함께센터가 상담소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어 활동에 제약을 갖게 된 것에 아쉬움이 있다.

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 중 기본적인 것은 쉼터와 현장활동지소이다. 쉼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함께 자활의 의지를 키워주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현장활동지소는 성매매 집결지 현장에서 성매매종사여성들을 선도하고 긴급 상황발생시 피난처로서의 역할도 하며 현장활동가들의 활동거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3월까지 서울시 5대 성매매집결지역을 중심으로 5개소의 쉼터와 5개의 현장활동지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 시설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 설치 및 민간위탁 현황]

구분	시설명	위탁체	개소일	소재지
종합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	한소리회	'03. 9. 1	동작구 대방동
쉼터 (보호시설)	다시함께쉼터	은성원	'03. 9. 5	00구 00동
	여울쉼터	사랑의세계	'04. 3. 5	00구 00동
	휴먼케어센터	예수재림교	'04. 5.12	00구 00동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나자렛성교회	'04. 5.12	00구 00동
	너른쉼터	막달레나집	'05. 3. 9	00구 00동
현장활동지소	강동지소	쏘나의집	'03. 9.15	00구 00동
	용산지소	막달레나집	'04.12.20	00구 00동
	동대문지소	예수재림교	'04.12.20	00구 00동
	성북지소	자립지지	'04.12.20	00구 00동
	영등포지소	영등포구청	'04.12.20	00구 00동

2. 지원인력의 양성 및 법률·의료지원단 구성·운영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인력은 지원시설과 더불어 성공적인 자활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이다.

서울시에서는 성매매 현장활동 인력의 부족을 인지하고 2003년부터 여성인력개발 센터 등에서 성매매 경험자, 일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활동가 및 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2005년 6월까지 현장활동가 93명과 전문상담원 58명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활동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또한 변호사, 전직 경찰 등 48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자문, 소장(訴狀) 작성등과 관련된 소송 실무지원과 재판 현장에서의 변론 등 전문적인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과, 내과, 산부인과 전문의 및 심리상담가 39명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성매매로 인하여 얻게 된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2004년 5월 성매매 관련 전형적인 피해사례를 모아 국가 및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2005. 6월 현재 2건 1심 승소, 1건 1심 진행 중)하여 성매매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지원단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의료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3.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상의 첫째 조건은 탈성매매 의지가 있는 여성이며 그 의지의 표현은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시에서는 상담의 총괄적인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시함께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다시함께센터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담을 의뢰할 만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함께센터가 개원(2003. 9. 1.)한 이후부터 2005. 8. 31.까지의 상담을 통한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지원실적]

(단위 : 건)

총계	2차 상담 권고	긴급 구조	긴급 보호	쉼터 연계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조사 동행	재판 동행	의료 지원	정보 제공	기타
11,529	1,721	95	131	291	2,474	269	663	193	294	5,094	304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후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쉼터에 연계시켜서 입소하게 한다. 쉼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과 집단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심신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과 검정고시 공부 등을 지원한다.

2005년 6월말까지 직업훈련 342명, 검정고시 187명을 지원하여 이 중 41명이 취업·창업에 성공하였으며 8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4.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에서는 시경찰청, 교육청, 민간단체, 언론계, 종교계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성매매방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협조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는 본협의회(위원수 23명)와 실무협의회(위원수 15명)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본협의회에서 최종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3년 5월 14일 최초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2005년 8월 까지 실무협의회 7회, 본 협의회 7회를 개최하였다.

5. 시민의식 개선운동 전개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변화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서 성매매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의식개선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우선 “한소리회”와 연계하여 ‘성매매 안하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는데 2003년 9월 18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서명을 받은 결과, 22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였다.

또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각 계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性文化)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주제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토론마당을 개설하여 토론을 통하여 성매매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대책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한소리회”로 하여금 성매매방지를 위한 시청각 교재를 개발(“여성매매”)토록 하여 각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다시함께센터의 상담사례집(“다시함께와 함께걷기”)을 발간하여 성매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지원인력들에 대해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IV. 향후 계획

성매매방지대책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분야’이다. 그리고 이 분야는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3월까지 1차적으로 계획하였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상담소 포함)의 설치를 완료하였지만 향후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민간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간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 자활지원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우리시 관내 성매매피해여성 전용쉼터(일반지원시설) 9개소(조건부 신고시설인 막달레나의집 제외)는 136명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시점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포화상태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 들어서 120명 정도의 수준으로 꾸준히 입소해 있는 실정이므로 큰 변수가 없는 한 보호시설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쉼터는 최장 1년 한 도 내에서 보호지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하여 그룹홈(일반가정형태의 장기지원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부터 그룹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말까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룹홈 3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활기간과 가정형편 등에 따라 쉼터 → 그룹홈 → 임대주택(여성가족부 추진 중)의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의 확충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다.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성향과 희망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성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들끼리 분리하여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한다면 서로 간에 격려와 경쟁을 통한 동기가 부여되어 자활의 성공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매매피해여성 전용쉼터의 특화운영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 확대 및 내실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의 최종 목표는 심신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직업훈련 또는

검정고시 등의 준비를 통하여 사회 또는 학교로 성공적인 복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지원이 주로 취업소여성들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시설입소를 원치 않거나 개인적인 성향 등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활에 도움이 되는 성매매여성들을 위해서는 다시함께센터를 통하여 법률·의료지원을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사실, 시설 비입소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자활성공의 첫째 요건은 성매매여성들 본인의 자활의지인데, 자활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를 시설입소 여부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 비입소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2005년 9월부터 서울시 5대 집결지역 중 우선적으로 용산구, 강동구, 성북구지역 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은 직업훈련 분야 선택 시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조류를 막연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훈련의 효율성 향상과 향후 미래의 직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지속적인 민·관협력 체계 유지 및 강화

성매매방지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 시스템의 구축, 지원 인력의 양성 등 하드웨어의 구축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협력 및 참가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에 참여시킴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대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담당직원의 인사이동 등의 요인으로 대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함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기능을 제외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과감하게 위탁함으로써 성매매방지대책의 일관성유지와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V. 다시함께센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법률지원의 성과

성매매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이명숙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하늘이 저만치 높아진 것 보니 벌써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
왔나 봅니다. 2년 전 이맘때 가을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다시함께센터가 걸음마
를 댈지 벌써 두 돌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시함께센터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외면 당하고
냉대받아 오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우리 사회에 알려 왔고,
지난해 시작된 성매매방지법에 힘입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너
무나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시함께센터의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성매매업소
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부류의 여성들이요, 법적으로 보호할만
한 가치가 없다'는 식의 냉소적이고 따가운 시선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
들 피해여성들을 도와주고 업주들과 선불금의 고리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다시함께센터 소속 법률지원단의 한 사람으로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을 통하여 다시함께센터와 함께 한 지난 2년이 매우 보람되게 느
껴집니다. 42명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법률상담을 하고, 민사소
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선불금채무나 각종 협박, 공갈 등

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성매매업주를 처벌하기까지 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관심을 끄는 획기적인 판결도 많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업주를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다시는 (성매매 피해여성) 찾아 오지 않고 선불금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성매매와 관련된 관련법규나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몇몇 변호사들이 스터디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토론회나 방송,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성매매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멀리 전남에 있는 섬까지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애정과 열의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울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다시함께센터를 자원한 박숙란 상근변호사의 열성적인 활동은 다시함께센터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믿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당사자간에 문제해결이 어려운 곳에는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한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피해를 구조하기 위해 다시함께센터 소속 변호사들은 최선의 방법을 찾으며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들의 법적인 고리가 끊어진 자리에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아픔은 다시함께센터 소속 의료지원단이나 상담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다시함께센터의 개소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진경 소장님을 비롯한 다시함께센터 가족들, 박숙란 변호사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고생해 주신 다시함께센터 소속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함께센터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 우리 사회로부터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다시함께센터가 늘 '다시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1. 업주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 이은희 변호사
... 김명애 상담원
2. 사채업주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김인숙 변호사
... 김희재 상담원
3. 성매매피해여성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불금 채권무효 ... 정호연 변호사
... 이지숙 사무국장

V.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피해여성 법률지원

1. 업주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김명애 상담원

1. 사건개요

J집결지에서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감금 상태에서 업주의 횡포와 성매매강요 등에 시달리던 성매매피해여성 7명 중 김OO이 손님 전화기를 어렵게 빌려 친척에게 전화해서 112에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친척의 신고전화를 받은 OO경찰서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구조 되었다.

업주는 계단에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감지기 센서를 설치하여 영업이 끝난 시간까지도 여성들을 감시하고, 핸드폰을 모두 압수하였을 뿐 아니라 업소 내에 설치된 전화만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전화를 사용할 때도 옆에서 모두 듣고 있어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게 하였다. 성구매자들이 없으면 눈치를 주며 욕을 했고, 민OO이 업주에게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업주는 민OO을 옷방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였다. 또한 여성들에게 신고식(옷을 벗고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부터 시작해 변태행위(계란쇼(질에 계란을 넣었다 빼내는 행위), 오픈쇼(병따개를 질로 잡아 콜라나 맥주 등을 따게 하는 행위), 물레방아(파트너를 바꿔 돌아가면서 성관계하는 행위))도 강요하였다.